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579 |
|----------|-------|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자 : 김영배 · 이학영 · 정준호  
최혁진 · 이재정 · 이정문  
이용선 · 문정복 · 한정애  
전현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 ·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 직원은 통일교육 의무이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통일교육 정의에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달리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초 · 중등 교사 및 시 · 도 교육청의 공무원의 경우 학교 통일교육의 주축으로서 올바른 통일관 정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 · 중등학교의 경우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 · 도 교육청의 경우 그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초·중등학교의 장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화적 통일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는 한편, 학교 내 통일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7제1항).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통일을 이룩하는”을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7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 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u>통일을 이룩하는</u>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1. -----<br>-----<br>-----<br>----- <u>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u> -----<br>-----<br>-----.                                                                                                                                                  |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u>지방자치단체의 장</u> 및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br>----- <u>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의 장</u> ,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 <u>초 · 중등교육법</u> 」에 따른 <u>각급 학교의 장</u> 은 소속 직원 등-----.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